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양순임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양순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7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4월 1일

발의자 : 강수진, 고영옥, 김경이, 김육영,
양순임, 오중균, 이관우, 이용진,
이일준, 임현주, 정기혁, 정해숙,
진선아

1. 제안이유

2022년 12월 「도서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,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규정을 명문화함. 또한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정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인용 조항을 정비함(안 제2조, 안 제6조)

나. 공·사립 작은도서관을 세분화하여 명시하며,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규정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명문화 신설함(안 제6조, 안 제6조의2)

다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정비함(안 제2조, 안 제6조, 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서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사전협의 : 문화체육과

라. 입법예고 : 2024. 4. 4. ~ 2024. 4. 8.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 제3조”를 “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도서관법」 제2조제4호가목 및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 제5조”를 “「도서관법」 제4조제2항제1호가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「도서관법」 제2조4호 및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3조”를 “「도서관법」 제4조제2항제1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「도서관법」 제2조제2호”를 “「도서관법」 제3조제2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「독서문화진흥법」 제2조제1호”를 “「독서문화진흥법」 제2조제1호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「작은 도서관 진흥법」 제5조”를 “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 제5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3조”를 “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33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 공립”으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)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등록

하려는 자는 「도서관법」 제3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「도서관법」 제36조에 따라 폐관신고서와 등록증을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”를 “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서관법」 및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,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	제1조(목적) -----		-----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-----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제2조(정의) -----		-----.
1. “작은도서관”이란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4호가목 및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·사립 도서관을 말한다.		1. ----- 「도서관법」 제4조제2항제1호가목-----		-----.
2. “공공도서관”이란 「도서관법」 제2조4호 및 「도서관법시행령」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서관을 말한다		2. ----- 「도서관법」 제4조제2항제1호-----		-----
3. “도서관자료”란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.		3. ----- 「도서관법」 제3조제2호-----		-----.

4. “독서문화”란 「독서문화진흥법」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문화를 말한다.

5. (생략)

제6조(설치 및 위탁) ① 구청장은 「작은 도서관 진흥법」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

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에 관한 기준은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3조와 같다.

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에 대해서는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.

<신설>

4. ----- 「독서문화진흥법」 제2조제1호-----
-----.

5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설치 및 위탁) ① -----
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 제5조-----

② -----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33조----

③ ----- 경우 공립 -----

-----.

제6조의2(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)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「도서관법」 제3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

제11조(운영시간 및 휴관) ① (생략) ② 「<u>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</u>」 제2조에 따라 공휴일 및 임시 휴관일은 휴관할 수 있되, 휴관일과 그 사유를 게시판 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.	<u>작은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「도서관법」 제36조에 따라 폐관신고서와 등록증을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제11조(운영시간 및 휴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「<u>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</u>」 제2조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